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기 상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839호, 2021. 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가. 기상업무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근(常勤)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

용공간을 갖출 것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

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제8조제3항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가. 기상업무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근(常勤)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848